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9. 16 선고 2020가합120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승목

피 고 1.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소영

2. B 주식회사

3. C

4. 주식회사 D

5. 주식회사 E

피고 2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 사이에 2019. 6. 17.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9. 6. 17. 접수 제330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F 사이의
2018. 3.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F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8. 3. 29. 접수 제211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발생

1) 원고는 F이 발행한 보통주 60,000주 중 18,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2017. 12. 28. F을
상대로 이 법원에 주식매수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위 주식매수대금청구 소송에서 2019. 5. 30. 'F은 원고에게 1,893,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2017가합10968 사건), 항소심 법원은
2020. 4. 16. '주식매수가액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른 비송사건이므로 피고가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19나13496 사건,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7. 2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F을 상대로 이 법원에 '원고가 매수를 청구한 F 발행 보통주식 18,000주의 매수가격을 1주당 71,679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0. 12. 15.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고(2020비합606 사건),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현재 수원고등법원 2021라10003호로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4) 원고는 F을 상대로 이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주식매수대금 1,290,2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20가합10555 사건), 위 사건은 현재 계속 중이다.

나. F의 재산처분행위

1) F은 2018. 3. 29.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토지와 건물을 각 표시할 때는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

2) F은 2019.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96,500,000원으로 하는, 피고 D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65,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E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21,6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5, 1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가 F의 이사로 재임하다 2017. 8. 18. 해임되었고 2017년경에는 F의 대표이사 G를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며 2017. 12. 28. F을 상대로 주식매수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F의 자산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직후 이를 알았을 것임을 전제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원고가 2018. 3. 29. 무렵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F의 주주로서 2017. 12. 28.부터 현재까지 F과 주식매수청구권의 존부를 두고 다투고 있고, 이 법원이 2019. 5. 30. F이 원고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1,89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항소심이 위 판결을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존부에 대해 판단한 후 위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주식매수가액 결정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른 비송사건이므로 비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던 것이다. 이에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차 이 법원에 비송사건인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1)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당한 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현재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사건이 수원고등법원에 계속 중이고, 별도로 원고가 이 법원에 F을 상대로 주식매수대금 1,290,222,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원고의 F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청구권이 2017. 12. 28. 이후로 계속 다투어 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그 부존재가 확정된 것은 아닌 점, 원고는 2020. 1. 16. F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매매대금 1,893,51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F에 대한 주식매수대금 채권 1,290,222,000원은 F의 각 재산처분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개연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F의 30% 지분을 소유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F의 대표이사인 G가 F를 경영하고 그 자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2017. 8. 18.경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기존 주주명부에서 원고 명의로 된 18,000주 부분을 삭제하고, G 명의의 주식수를 18,000주에서 36,000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새로 작성하는 등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갑 제6호증의 1 3면 참조), 원고가 주식매수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에 F은 '본점 소재지의 건물 및 토지의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본점 소재지의 건물 및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국내에서의 F의 영업은 폐쇄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음에도 그 양도 대금 중 원고가 주주로서 취득한 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본점 소재지의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F의 유일한 재산이 되었으나 G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 5억 원의 대출을 받는데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F에 손해를 입히기도 한 점(갑 제13호증의 1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매수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 제12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8. 3. 29. 당시 피고 F은 시가 3,245,778,000원(2018. 3. 21. 기준 시가임, 이하 같다) 상당의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실, 그 무렵 F의 소극재산은 ①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주식매수대금지급 채무 1,290,222,000원2),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40,000,000원, ③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7. 3. 27. 차용한 대출금 1,000,000,000원, ④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8. 3. 6. 차용한 대출금 잔액 27,552,000원, ⑤ I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41,000,000원, ⑥ J회사에 대한 채무 42,000,000원, 합계 2,440,774,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F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F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F과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기 체결된 2018. 3. 6.자 200,000,000원의 한도대출 계약 및 이후 추가로 받을 예정인 500,000,000원의 대출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실제로 F은 2018. 6. 5. 200,000,000원(을가 제3호증) 및 300,000,000원(을가 제4호증)의 대출을 각 받았다}, 비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840,000,000원으로 정해졌으나 실제 차용 금액은 700,000,000원이었다.

② 위 27,552,000원은 F이 2018. 3. 6. 한도를 200,000,000원으로 하여 받은 대출의 같은 달 29.의 실제 대출액이다. 그런데 당시 F은 이를 포함하여 7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후 이 사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상태이므로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계산할 경우 소극재산은 3,113,322,000원(2,440,774,000 원-27,552,000원+700,000,000원)이 된다.

③ 이렇게 소극재산을 계산하더라도, 즉 제1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을 포함하여 소극재산을 계산하더라도 F의 소극재산은 3,113,322,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3,245,778,000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F 사이의 이 사건 제1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F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1,290,222,000원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여부

가) 2019. 6. 17. 당시 피고 F은 시가 3,245,778,000원(2018. 3. 29. 기준의 시가이나 이후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시가로 본다)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나) 한편 F의 2018. 3. 29. 당시 소극재산은 ①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주식매수대금지급 채무

1,290,222,000원, ②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40,000,000원, ③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7. 3. 27. 차용한 대출금 1,000,000,000원, ④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8. 3. 6. 차용한 대출금 잔액 27,552,000원, ⑤ I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41,000,000원, ⑥ J회사에 대한 채무 42,000,000원, 합계 2,440,774,000원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F은 2017. 8.경 본점 소재지의 건물 등을 매각하였고, 이후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 3. 29.부터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체결된 2019. 6. 17.까지 별다른 수입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한도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위 채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음으로 2018. 3. 29. 이후 발생한 채무 금액을 확인한다. F이 2018. 6. 5.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200,000,000원 및 30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는 앞서 2018. 3. 6. 이미 받았던 200,000,000원의 대출(앞서 보았듯 같은 달 29. 잔액 27,552,000원이 남아 있었던 것)과 함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되는 것이었다. 즉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700,000,000원에서 위 27,552,000원을 공제한 것이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관련하여 2018. 3. 29. 발생한 소극재산이다. 이에 더하여 F은 2019. 6. 17. 피담보채무액을 피고 B 1,000,000,000원, 피고 C 196,500,000원, 피고 D 165,000,000원, 피고 E 121,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준 바,

1,483,100,000원(1,000,000,000원+196,500,000원+165,000,000원+121,6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주장, 입증에 없으므로 일응 채권최고액 전부를 피담보채무액으로 본다). 결국 2019. 3. 29. 이후 발생한 소극재산은 2,155,548,000원 $\{(700,000,000\text{원}-27,552,000\text{원})+1,483,100,000\text{원}\}$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F의 총 소극재산은 4,596,322,000원(2,440,774,000원+2,155,548,000원)이다.

다) 이처럼 F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 B 등’이라 한다)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F은 원고를 사해할 의사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2019. 5. 30. F은 원고에게 주식매수대금 1,893,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채 경과하기 전인 2019. 6. 17.에 마쳐졌다.

나) 피고 B 등은 F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은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8. 3. 29.경 완공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9. 6. 17.경까지 피고 B 등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확인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만일 피고 B 등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액의 공사대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공사를 종료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대금채권 회수 노력을 하였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 B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접수번호도 동일하다. 4군데의 공사업자가 같은 날, 같은 접수 번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은 채무자 F의 개입 내지 양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8. 3. 29.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을 840,000,000원으로 하는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으나, 접수번호가 다른 점과 비교해 보면(피고 중소기업은행과 F은 각 다른 내용으로 2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임) 더욱 그러하다.

4) 피고 B 등의 악의

가) 피고 B 등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F이 채무초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B 등은 선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F과 피고 B 등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B 등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9. 6. 17. 접수 제330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률, 판사 이종찬, 판사 이은숙

별지

1. 충청남도 아산시 K 대 653㎡
2. 충청남도 아산시 K에 있는 L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M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523.6 ㎡
1층 392.44 ㎡
2층 398.44 ㎡
3층 387.04 ㎡
4층 387.04 ㎡
5층 232.44 ㎡. 끝.

1)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주주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그 결과 회사는 법정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의무만 남는다고 한다(H학회 온라인 주석서 참조).

대법원도 “합병 반대하는 주주(이하 ‘합병 반대주주’라고 한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상법 제530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고 판단한 바 있다.

2)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매수대금은 정해지지 않았었고, 2019. 5. 30.경 제1심은 F은 원고에게 1,893,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위 판결이 취소된 후 원고가 새롭게 F에게 그 지급을 구한 주식매매대금은 1,290,222,000원이어서 원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의 최대금액이 1,290,222,000원이 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액으로 삼는다.